

파주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촉진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파주시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현재 파주시가 직영처리 및 수거대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안정된 전문인력 확보와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처리시설의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파주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전반
- 나.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다.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본 동의안은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을 내용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선정은 시의회 2인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통제가 가능함.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나. 내용타당성

분뇨처리시설을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처리비용을 보면 민간위탁시 시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구 분	직영시	민간위탁시	비교(증감)
처리용량	154KL/일	154KL/일	
운영인력	16인	9인	△7명
유지관리비(총계)	742,843,000원	572,064,000원	△170,779,000원

(1998년 3월기준)

단,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시 현재 파주시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14명)의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분뇨처리시설 운영인력현황

계	보건직	환경직	기계직	화공직	기능직	일용직
14명	1명	1명	1명	1명	7명	3명